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결과 보고

□ 포럼 개요

- (주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 공동 연구 및 활용 방안
 - 사회 : 김민영 교수(군산대학교)
 - 발표 : ①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활용 방안
 / 노영종 학예연구관(국가기록원)
 - ② 강제동원 기록 연구 및 서비스 방안 / 남상구 소장(동북아연구재단)
 - 토론 : 류준범 실장(국사편찬위원회), 허광무 연구위원(부평문화원), 한혜인 연구원(성균관대학교)
- O (일시/장소) '19. 12. 3.(화) 14:00~17:00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O (참석) 총 51명
 - (내부) 원장, 기록정책부장, 연구협력과장, 관련 담당자 및 관심 직원 10명
 - (외부) 역사학계, 대학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41명
 - ※ 공공기관(17명), 중앙행정(12명), 교육청(4명), 지방행정(3명), 군기관(2명), 대학기관(1명), 일반12명, 대학원생)

□ 주요 논의 내용

- 국가기록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독립기념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 등 기관별 소장 강제동원 기록 보존 현황 및 DB 구축 현황
- 강제동원 기록 통합 관리를 위한 DB 구축 기본 설계 및 구성 항목
- O 강제동원 기록의 공개·활용을 위한 자료의 목록화 및 해제 작업
- 강제동원 관련 학술연구를 위한 기관별 소장 기록의 통합 관리 및 명부 이외 관련 자료(사진, 구술 등)의 콘텐츠 활용 확대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피해 사실 접근이 용이한 명부 DB 구축
- 타 기관의 旣 구축 시스템 보완을 통한 통합시스템과의 연계 방식
- 인명 및 지명의 표기 방식, 피해사실 확인 절차 및 기준 마련 여부

- 1 -

붙임 1

주요 질의 및 응답

- (류준범 실장) ① 강제동원 DB 구축의 일차적인 목적은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별 피해현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많은 명부상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통합하여 강제동원의 규모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 ② DB 구축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자료 제공이 이루어져야하며, 명부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선택적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함. 피해자 재판 지원 증거자료의 입증을 위해문자 표기는 원문 그대로 하며, 해당 명부의 정보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본의 디지털 이미지도 바로 연결되어져야 함. 아울러 각각의 명부 해제가 동시에 제작되는 방식을 병행하면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 ③ 명부 이외의 방식으로 요소들을 받거나 분류한 정보들을 DB 제작 단계에서 작업하게 되면 DB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전체 명부의 각 개별 요소들 모두를 포함하는 슈퍼 셋 형식보다는 공통적 으로 검색에 필요한 공통 셋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④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날짜 정보 혹은 행정구역 등은 분류 검색이용이해야 하므로 DB 제작 단계에서 통제가 미리 이루어져야 함. 다만일본 측 지명의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후통제 하는 것이효율적일 것임. 따라서 DB가 구축된 후 데이터 활용을 위해 후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통제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면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됨.
 - 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 요소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인별 연결 문제 등 DB 확장 연계 부분은 공감하지만 예산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함.
- (허광무 연구위원) ① 공개되는 강제동원 기록이 명부류에 집중될 경우 관련 내용의 소략으로 일본에 대응하여 진상 규명하는 연구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명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이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 ② 사진자료는 명부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확인 가능하게 하고, 구술자료도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하여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므로 명부 이외의 자료들을 콘텐츠로 하여 통합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주었으면 함.
- ③ 위원회에서는 성격과 내용의 차별화를 둔 피해 진상관리 시스템과 위로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는 피해조사를 위한 것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엑셀자료 확보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지급을 위한 것으로 검색 기능이 없음. 따라서 통합시스템에서는 旣 구축된 시스템을 보완하여 상호 연계 활용하면 좋을 듯함. 그밖에 사할린의한인 사망자의 기록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 사할린 한인묘 찾기 시스템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듯하고, 사할린 한인 사망자 관련 기록도 자료만입수하지 말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만드는 방법도 필요할 것임. ④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오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료의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부의 성격 및 수집 경위 등을 수록한 자료해제가수반되어져야 할 것임.
- (한혜인 연구원) ① 최근 강제동원을 식민지 지배의 불법행위에 관련한 피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명부를 통해서 피해자를 확인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신고자, 명부를 동일한 피해자로 보고 그 이후에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② 지금까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제도권 속에 있는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제도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 판정을 못 해주는 모순을 겪어 왔음. 따라서 아카이빙은 우리가 증명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해 가느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③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기록원에서도 강제동원 정책 등에 관련한 공문서, 기업 서류, 명부류, 피해자 증언, 피해자 운동, 피해자 재판 관련, 위원회 피해자 조사결과 등을 동등한 자료로 취급해주면 좋겠음.

- 3 -

역사학 연구자의 경우 공문서를 중심으로 하고 하위 개념으로 다른 2차 자료를 구성하게 되는데 피해자를 다루는 피해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증명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임.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 판정을 못 받은 것은 피해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도권 속에 없었던 피해자였기 때문임.

- ④ 현재 일본 소재 강제동원 기록은 대부분 수집된 상황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한 곳에 집중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좋을 듯함.
- ⑤ 일본의 자료 공개 창구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새로운 문건들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일본의 총동원체제 속에서의 동원 관련 및 일본 정부 내각의 결정 문서들을 수집하고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강제동원기업서류, 운동단체 서류, 고 김광렬 선생님 기증자료, 재화조선인회의이희팔 회장(사할린 관련) 등 강제동원 기록으로 특화시킨 목록작업을 추진하면 좋겠음.
- ⑥ 명부류는 명부의 성격을 고려하여 $1 \cdot 2$ 차로 구분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의 항목에 기초하여 명부의 DB화를 추진하고, 군인군속 관련해서도 「유수명부」를 중심으로 정리해가면 좋겠음. 아울러 민주의 피해, 남양농업 이주의 피해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동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듯함.
- (노영종 학예연구관) ① 통합 DB 구축과 관련해서 단순히 명부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기록의 아카이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 적극동의함. 명부만으로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의산출, 전체적인 역사상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강제동원 아카이브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고,연구자료 혹은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함. ② 통합 DB 구축과 관련해서 해방 이후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진자료,구술자료, 공문서 이외 재판기록,위로금 지급 등의 자료들은 별도로 DB를 구축해서 연계하는 방안이 어떨까 함. 기본항목의 선정기준을 갖고 기본항목과 함께 확장자 항목을 만들고 별도로 DB를 구축해서

연계할 자료들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원 자료에 있는 원문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음. 다만, DB를 구축한후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 활용 부분은 연구자의 몫이라고 생각함. ③ 명부 원본은 2001년부터, DB 자료도 2003년부터 공개해 왔음. 다만, DB 자료가 새로 만들어질 때 이 DB 자료가 2003년도에 공개했을 때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금 시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분명차이가 있음. 현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법률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함.

- ④ 동일 인명의 판별 부분은 군인군속은 동일 인물을 판단하기 수월할 수 있겠지만, 노무자의 경우는 동일인이라고 국가기록원에서 확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작업임.
- ⑤ 강제동원위원회에서 DB 구축해서 사용했던 명부원문시스템에서 명부 이미지까지 제공하였는데 국가기록원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보정・보완했는지, 나아가 수록된 분은 몇 명인지 궁금함.
- ⇒ (허광무 연구위원) 시스템 구축 당시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남. 다만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테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단독 입수한 자료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시켰음. 사본 이미지 파일과 연동되지 않지만 당장에 피해자 판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DB화 시켜서 탑재한 것이 있음. 예컨대수색연금보험 확인과 관련해서 일본측에 노무자・군속군무원 약 19만명의 명부 조회를 요청하여 약 5천명을 회신을 받아 명부 활용을 위해 DB화해서 탑재한 바 있음. 사본 이미지 파일과 연동되지 않지만 당장에 피해자 판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DB화시켜서 탑재한 것이 있음. 위원회가 조사했던 23만여 건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정작업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함.
- ⇒〉 (남상구 소장) 시스템 자체는 피해자 판정 목적에 적합다고 생각됨. 「해군군속자명부」는 일본에서 받은 명부 사본 1쪽이었는데 일본에서 신청해서 받으면 2쪽임.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본과 일본의 원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수명부」도 한국에 주기 위해 아마 따로 떼어놓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실제로 원래 편철 형태는 어떠했는지. 담당자는

- 5 -

일본 정부와 논의하여 명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함.

- ② 명부 DB 자료를 이전부터 공개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음.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 할수 있는 엑셀자료가 가장 유용했음. 그래서 제공해주는 명부도 있으나실제로 연구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도 가능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았고, 전체 틀을 만드는 데 이 명부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임.
- ⇒ (김명환 연구원) ① 역사관으로 넘어간 명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명부 자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칼라판 입수가 필요한 듯함. 강제동원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해군군속자명부」를 재입수했을 때 앞면, 뒷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첨부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음. 「유수명부」도 칼라판으로 입수하면 다른 이름도 나올 수도 있을 것임.
- ⇒〉(노영종 학예연구관) 「해군군속자명부」는 마이크로 형태로 받아 정리한 바 있음. 「유수명부」 중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라고 판단한 명부 일부를 복사한 사본을 받았음. 통합 DB 구축 시 관련 연구자들을 포함시켜서 논의하면 좋을 듯함.
- ② 남방 쪽으로 노무자로 가신 분, 군속 가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DB 구축 시 그런 부분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 동남 아시아 쪽으로 가신 분들은 대개 성가폴을 경유해서 돌아오는데 그쪽에 통과 명부들이 남는 경우가 있음. 그런 자료가 통합적으로 입수안 되고 기관별로 띄업띄엄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려보면 지금 파악된 명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일본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입수했지만 위원회폐지로 인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찰문서에 대한 처리 부분도 국가기록원의 검토가 필요할 듯함.
- ③ 미국 측의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경우 창씨명 혹은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료들을 가져왔을 때 인명, 지명 등을 어떻게 표기할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듯함.
- (노영종 학예연구관) 지명의 표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인명의 경우 한자를 일본어로 읽고 다시 영어 혹은 러시아어로 표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원명을 적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함.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① 관련 기록을 정리·제공하는 입장, 연구자의 입장, 운동 쪽의 관점에서 접근방식이 각기 다른 듯함. 제시하신 내용이 모두 필요한 작업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산재되어 있는 명부를 통합해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강제동원 기록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방식은 다름.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 => (한혜인 연구원) 명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소이산가족 회 사할린 명부, 재화태조선인회의 이희팔 회장 기증 사할린 관련 명부가 같이 입력되면 좋겠음. 명부라고 되어있는 것과 사료 속에 들어가 있는 명부들을 같이 수집해서 정확하게 연구하고, 명부의 해제는 현재 반이상 작업된 상태에서 플러스α해서 완성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함.
 - ■> (허광무 연구위원)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음. 다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부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고, 시스템 설계는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은 후에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듯함.
 - ⇒ (류준범 실장) 명부에 나와 있는 각 요소들은 모두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임. 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쌓는 DB 구축이 필요함.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①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할 때 데이터 요소와 각 테이터 값을 다루는 평면적인 DB 가지고는 곤란할 듯함. 예컨대 날짜 요소만 보더라도 날짜 데이터 안에 출생일자, 이송일자, 징발일자 등과 같이 다양해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 데이터까지 데이터 스키마를 온톨로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면 해법이 있을 것임.
 - ② 단순히 명부에 들어있는 한 명의 데이터 건과 그 분의 관련 사항이들어가 있는 명부의 중층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그 명부에 입력된 사실이발생한 당시의 업무활동으로 작성된 명부인지, 이후에 상황을 조사하기위해서 취합하면서 만들어진 명부이냐 또 그 명부를 두 개의 명부를 기반으로 해서 피해자 사실을 조사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명부이냐 이세 개가 모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값도 다르고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

- 7 -

내용도 다를 것으로 생각됨.

- ③ 데이터 구조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듯함. 디스플레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나중에 이 데이터는 연구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전시, 콘텐츠 개발 등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을 것임.
- ④ 인명과 지명은 시소러스가 중요한데 시소러스는 사전 작성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자연어 형태로 다 입력해 놓고 동일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형으로 표기되는 것들을 구조화해서 채택어와 비채택어로 연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됨. 국편 내부적으로 DB 구축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인명 특히 총독부 시기의 창씨개명과 관련된 인명 시소러스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지.
- ■> (류준범 실장) 한자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사전은 있고, 문자는 일본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대로 입력해도 추적이 가능할 것임. 여기에 쓸만한 시소러스는 아직 없지만 창씨된 부분의 추적은 내년에 관보가 완성되면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듯함. 또한 일본 측 지명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지명은 행정 동/리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자연 동/리는 내년에 지도에 있는 지명으로 나오므로 도움될 만함.
- ⑤ 강제동원위원회에서 피해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 유형별 요건 등을 정리하는 데에 적용하는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허광무 연구위원) 일본이 제공한 자료 가운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는 명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동원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쓰는 데 매우 유용함. 그리고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판정할 때 신고일을 경청했고,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 안 했으면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객관적인 문헌자료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음.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부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것은 검증을 거쳤음.

붙임 2 2019년 제4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모습











